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57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 김문수 • 주철현 • 박지원

정일영 • 박해철 • 김남근

최민희 • 이용우 • 문정복

서영교 · 김준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로 <u>제2항의</u>	③ <u>제2항</u>
<u>규정</u> 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	
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u>국가인</u>	
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	<u> 장</u>
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	
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	
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	
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④ <u>제3항</u>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	
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	
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